지구촌 미디어 : 인터넷 표현자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미 법원 논란

340호: 140-141

음란물은 합법, 폭력물은 위법(?)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아직 명확한 판례나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기본권의 하나인 헌법과 갈등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두 사건 모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책임'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네트워크사간의 법률적인 책임한계 문제도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어린이 음란물 방지법은 위헌'

이 논란의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1996년 어린이음란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이다. 1982년 미국 대법원이 처음 마련한 이 법은 기존의 연방형법을 보완하여 재개정한 것으로, 미국 대법원에서도 "어린이 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 대상이 아니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상용 제공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를 법제화하고자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서명도 받았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소송에 따라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97년 8월에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이야말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내용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자유언론연맹(Free Speech Coalition)은 "언론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이 법은 너무 모호하고 (vague) 광범위하다(overbroad)."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미국 전역에서는 판사들 사이에도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메인(Maine)주에서는 전기기술자인 데이비드 힐튼(David Hilton)이라는 사람이 '어린이음 란물방지법'에 의해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힐튼 변호인 측에서는 기소중지를 요청하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판결에서 포틀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 진 카터 (Gene Carter) 판사는 "이 법은 어린이 음란물과 관련 유해한 이차적인 효과를 방지할 목 적으로 제정된 내용중립적인 법(content-neutral law)"이라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하면서 힐튼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법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것이 지 '내용'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제1항소심에 항소한 상태에 있고 이 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제9항소심 에서도 동시에 심리중에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사건에서건 반대의견이 제시된다면 대법 원 재량상고 가능성이 높아 위헌성 시비가 곧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적 표현은 불법

한편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배심원은 메인주 카터 판사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마치 지명수배 전단처럼 만들어 이른바 '뉘렌베르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반낙태주의단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폭력물이나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통과 같이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사이트가 의사들에 대한 살상과 폭력을 방조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1억 7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반낙태주의 단체들은 당연히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단체의 하나인 가족계획모임(Planned Parenthood)은 평결 배상금액이 너무 과도하며 인터넷 상의 포스터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위협이나 임박한 살인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2월 3일 미 정부측에서는 반낙태주의자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네트워크사에서는 가입시 강제탈퇴규정의 하나인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폭력적 언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육체적 위협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이트를 폐쇄했다. 홈페이지를 폐 쇄당한 반낙태주의단체측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관계단체에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은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표현의 자유 한계는 어디까지

이들은 특히 이번 평결 내용이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형법에 반해 "산모의 건강이나 기타 임신과 관련하여 외과의사가 낙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도 좋다."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블랙먼(Blackmun) 대법관의 추종자에 불과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최종 가처분 결정은 아직도 몇주 남아 있지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현 / 한국언론재단 연구연수국장